

화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1995. 10. 6.

제 출 자 : 화 순 군 수

1. 제안이유

훈령으로 시행하고 있는 내부위임 규정이 지방자치법 제95조(사무의 위임등)로 재정되어 지방자치법 제95조에 의하여 화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를 개정(정비)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중 군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읍면장이 처리할 수 있는 사무를 조례로 읍면장에게 위임하며, 훈령으로 시행하고 있는 화순군 사무의 읍면위임 규정은 폐지함.
- 조례 위임 총 건수 : 69건 (군수 고유 사무)
 - . 당 초 : 62건
 - 신규위임 : 11건
 - 군 환 원 : 4건

화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(안)

화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"별표"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 (폐지규정) 화순군 사무의 읍면위임 규정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.

(별 표)

권 한 위 임

실과소명	위 임 사 무 명	위 임 사 무 명	수임 기관	비고
문 화 공 보 실	1. 공연신고 2. 향토문화재 조사 및 관리	○ 공연법 제14조 2항 ○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 제95조 제1항	읍면 "	
내 무 과	1. 읍면6급이하 공무원 정기 승급 2. 읍면6급이하 공무원 휴직 발령 3. 읍면 휴직공무원 복직발 령 4. 읍면 계장 및 출장소장 보직발령 5. 읍면8급이하 지방공무원 특별임용 제청 6. 이행정 지도 7. 문서보관 및 폐기(다만 문서를 폐기할 때에는 군 수에게 사전에 보고하여 야 한다) 8. 인장업 신고 사무 9. 읍면 지방공무원 시보해 제	○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6조 ○ 지방공무원법 제63조 ○ 지방공무원법 제65조 제 2항 ○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 2항 ○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 2항 ○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○ 사무관리규정 제28조 및 제31조(대통령령 제13390 호, '91. 6. 19) ○ 인장업법 제3조 제1항 ○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 항	" " " " " " " "	
재 무 과	1.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징수	○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	"	

실과소명	위 임 사 무 명	위 임 사 무 명	수임 기관	비고
재 무 과	2. 수입증지 판매 및 판매인 지정 3. 당해 읍면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의 부과징수 4. 부동산 과세 표준액 조사 사무	○ 화순군수입증지조례 제7조 및 제9조 ○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및 제95조 제1항 ○ 지방세법 제187조 제196조의 5 및 제234조의 15	읍면 " "	
사 회 과	1. 위생 접객업소 지도 2. 유기장 휴업, 재개업. 폐업 신고처리 3. 생활보호대상자 조사 4. 생활보호대상자 보호금품 지급 5. 노임소득사업 취로대상자 선정 6. 노임소득사업(직영) 집행 7. 영세민 취로사업장 지도, 감독	○ 공중위생법 제20조 ○ 공중위생법 제10조 제2항 ○ 생활보호법 제17조 ○ 생활보호법 제9조 ○ 생활보호법시행규칙 제16조 ○ 생활보호법시행규칙 제16조 ○ 생활보호법시행규칙 제16조	" " " " " " "	
환 경 보 호 과	1. 가축사육 제한구역내 가축사육 단속 2. 건축법 제9조, 제15조 제2항 제72조에 해당하는	○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률 제34조 화순군가축사육제한에 관한조례 제6조 ○ 오수,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률 제10조 및	" "	

실과소명	위 임 사 무 명	위 임 사 무 명	수임 기관	비고
	사항으로서 정확조 설치 (변경)신고 및 준공검사에 관한 업무	동법 시행규칙 제13조		
가 정 복 지 과	1. 매장. 개장. 화장 신고	○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5조	읍면	
산 업 과	1. 수도묘판 공동방제업 2. 수도비배관리 및 지도계몽 3. 농약공급 4. 농지전용신고 수리	○ 농업기본법 제3조 및 제9조 ○ 농업기본법 제3조 및 제9조 ○ 농업기본법 제3조 및 제11조 ○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 제1항 및 제2항 ○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7조 ○ 농지전용업무처리세부규정 제15조(농림수산부훈령 제821호 '95. 5. 11)	" " " " " "	
산 림 과	1. 신고에 의한 임목 벌채 2. 가로수 관리	○ 산림법 제90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7조 ○ 가로수관리규정 제14조 (산림청예규 제302호.'87 1. 3)	" "	

실과소명	위 임 사 무 명	위 임 사 무 명	수입 기관	비고
산 립 과	3. 입산허가	○ 산림법 제98조	읍면	
지 역 경 제 과	1. 시장점포 사용허가 및 갱 신	○ 화순군시장운영관리조례 제5조	"	
건 설 과	1. 2,000만원이하 공사 시행 2. 도로점용 허가 3. 도로공작물 설치 허가 4. 공유수면 공작물 설치허 가 5. 부동산 소유사실 증명원 6.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 사업 시행시설물 사후관리	○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 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7호 마목 ○ 도로법 제22조, 제4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 24조 ○ 도로법 제22조, 제4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 24조 ○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 제1항 ○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26 조 제4항 ○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36조	" " " " "	
도 시 과	1. 토지 출입허가 2. 토지 형질변경 허가(1,00 0㎡이하) 및 단속조치 3.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조치	○ 도시계획법 제5조 제2항 ○ 도시계획법 제4조 및 제 92조 제1호 ○ 건축법 제69조 제1항 및 제71조 제3항	" " "	

실과소명	위 임 사 무 명	위 임 사 무 명	수임 기관	비고
도 시 과	4. 공공하수도 관리(도시계획구역내)	○ 하수도법 제7조	읍면	
	5. 수도사용료 부과징수	○ 수도법 제17조 및 화순군 수도급수조례 제25조	"	
	6. 수도폐전 신청 처리	○ 화순군수도급수조례 제24조	"	
	7. 개인급수전 설치허가	○ 화순군수도급수조례 제7조	"	
	8. 급수사용료의 이의신청	○ 화순군수도급수조례 제44조	"	
	9. 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	○ 화순군수도급수조례 제38조	"	
	10. 급수신고 업무처리	○ 화순군수도급수조례 제18조 제1항	"	
	11. 급수장치 관리업무 승계 업무 처리	○ 화순군수도급수조례 제 22조	"	
	12. 수도사용료 감액 신청 처리	○ 화순군수도급수조례 제37조	"	
	13. 급수공사의 승인	○ 화순군수도급수조례 제6조	"	
	14. 공용급수장치의 설치	○ 화순군수도급수조례 제6조의2	"	
	15. 급수공사의 시행	○ 화순군수도급수조례 제7조	"	
	16. 급수공사의 준공검사	○ 화순군수도급수조례 제7조의 2	"	

실과소명	위 임 사 무 명	위 임 사 무 명	수임 기관	비고
도 시 과	17. 급수공사의 직권 시행	○ 화순군수도급수조례 제15조	읍면	
	18. 상수도 요금의 조정	○ 화순군수도급수조례 제28조	"	
	19.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	○ 화순군수도급수조례 제30조	"	
	20. 정수처분	○ 화순군수도급수조례 제40조	"	
	21. 급수장치 철거	○ 화순군수도급수조례 제43조	"	
	22. 연면적이 85제곱미터(건축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읍·면 지역에서는 100제곱미터) 이하의 주택 또는 부속 건축물의 증축·개축·재축 및 대수선	○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제3항	"	
	23. 제7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서 50제곱미터이하의 증축·개축·재축·대수선 다만, 동조 동항동호아목 및 카목의 규정에 의한 관리용건축물의 증축을 제외한다.	○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제3항	"	
	24. 연면적 200제곱미터미만	○ 도시계획법시행규칙	"	

실과소명	위 임 사 무 명	위 임 사 무 명	수임 기관	비고
도 시 과	<p>인 축사와 연면적이 100 제곱미터미만인 창고의 증축.개축.재축및 대수선</p> <p>25. 죽목의 식재</p> <p>26. 별표1의 시설 상호간의 용도변경. 다만, 휴게음 식점.일반음식점.병원. 슈퍼마켓.금융업소및 학 원으로 용도변경하는 경 우를 제외한다.</p> <p>27. 생산품의 보관을 위하여 기존공장부지안에 설치 하는 임시가설천막</p>	<p>제7조 제3항</p> <p>○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제3항</p> <p>○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제3항</p> <p>○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제3항</p>	<p>읍면</p> <p>"</p>	
보 건 소	<p>1. 삭 제</p> <p>2. 삭 제</p> <p>3. 삭 제</p> <p>4. 삭 제</p> <p>5. 대마재배허가등</p> <p>6. 방역소독조치 및 자율방 역 지도업무</p> <p>7. 배정범위 안의 방역약품 유류수불 및 방역장비 관 리 등</p>	<p>○ 대마관리법 제5조, 제7조 제9조, 제14조</p> <p>○ 전염병예방법 제40조</p> <p>○ 전염병예방법 제40조</p>	<p>"</p> <p>"</p> <p>"</p>	

신 . 구 조 문 대 비 표

실과소명	현 행		개 정 안		비고
	위임사무명	근거및적용법률	위임사무명	근거및적용법률	
환 경	1. 가축사육 제한구역내 가축사육 단속	○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법률 제34조, 화순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제6조	1.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	○ -	신설
			2. 건축법 제9조, 제15조 제2항 제72조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정화조 설치(변경)신고 및 준공검사에 관한업무	○ 오수.분뇨및 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법률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 ○ 같은법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15조	
산 업 과	1. 수도묘판 공동방제 2. 수도배관 리 및 지도계몽 3. 농약공급	○ 농업기본법 제3조및 제9조 ○ 농업기본법 제3조및 제9조 ○ 농업기본법 제3조및제11조	1. - - - - - - - - - - 2. - - - - - - - - - - 3. - - - - -	○ - - - - - - - - - - ○ - - - - - - - - - - 3. - - - - - - - - - -	

실과소명	현행		개정안		비고
	위임사무명	근거및적용법률	위임사무명	근거및적용법률	
산업과			4. 농지전용신고수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제47조제1항및제2항 ○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7조 ○ 농지전용업무처리세부규정 제15조(농림수산부훈령 제821호 '95. 5. 11) 	신설
건설과	1.~ 5. 생략		1. ~ 5. --- 6. 농어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시행시설물사후관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----- ○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6조 	신설
도시과	1. ~ 21. 생략		1. ~ 21. --- 22. 연면적이 85제곱미터(건축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----- ○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제3항 	신설

실과소명	현행		개정안		비고
	위임사무명	근거및적용법률	위임사무명	근거및적용법률	
도시과			<p>규정에 의한 읍.면지역에서는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또는 부속건축물의 증축.개축.재축및 대수선</p> <p>23. 제7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서 50제곱미터 이하의 증축.개축.재축.대수선 다만, 동조 동항동호아목 및카목의 규정에 의한 관리용건축물의 증축을 제외한다</p> <p>24.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미만인 축사와 연면적이 100</p>	<p>○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</p> <p>○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</p>	<p>신설</p> <p>신설</p>

실과소명	현행		개정안		비고
	위임사무명	근거및적용법률	위임사무명	근거및적용법률	
도시과			<p>제공미터 미만인 창고의 증축.개축.재축 및대수선</p> <p>25. 죽목의 식재</p> <p>26. 별표1의 시설상호간의 용도변경. 다만, 휴게음식점.일반음식점.병원슈퍼마켓.금융업소및학원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.</p> <p>27. 생산품의보관을 위하여 기존 공장부지안에 설치하는 임시가설 천막</p>	<p>○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</p> <p>○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</p> <p>○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</p>	<p>신설</p> <p>신설</p> <p>신설</p>
보건소	1. 배정범위안의약품수불	○ 전염병예방법 제10조, 제	1. 삭제	○ 삭제	

검 토 보 고 서

□ 조 례 명

- 화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(안)

□ 주 요 내 용 (안 제2조 별표)

- 건축법 제9조 (건축신고), 제15조 제2항 (가설건축물)에 해당하는 정화조 설치 변경신고 및 준공검사업무 (내부위임 → 권한위임)
 -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 제1항,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(신고에 의한 농지전용) 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 수리 (내부위임 → 권한위임)
 -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시행 시설물 사후관리 (신설)
 -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면적이 85제곱미터 (건축법시행령 제11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읍.면지역에서는 100제곱미터) 이하의 주택 또는 부속 건축물의 증축. 개축. 재축 및 대수선 신고 (신설)
 -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인 축사와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창고의 증축. 개축. 재축 및 대수선 신고 (신설)
 - 방역소독 조치 및 자율방역 지도업무 (신설)
 - 배정범위 안의 방역약품 유통수불 및 방역장비 관리 등 (신설)
 - 배정범위 안의 약품수불 및 예방접종 (삭제)
 -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 (삭제)
- ※ 화순군사무의 읍면위임 규정 폐지

□ 개정 사유

- 지방자치법 제95조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개정 ('94. 12. 23) 으로 인하여 군 훈령으로 시행하고 있는 화순군사무의 읍면 내부 위임 규정이 폐지되고,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중 일부를 읍·면장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자 화순군사무의 읍면위임조례를 개정 정비하려는 것임.

□ 검토결과 (의견)

- 본 조례 개정 (안)은 훈령으로 시행하고 있는 화순군사무의 읍면 내부위임 규정의 폐지와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중 일부를 읍면장에게 권한위임 처리케 하여 행정능률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위해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도의 정비지시 및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.

화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총 무 위 원 회

화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화순군수

나. 제출일자 : '95. 10. 19

다. 회부일자 : '95. 10. 19

라. 상정일자 : 제 38 회 임시회 제 1 차 총무위원회 ('95. 10. 30)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내무과장 이병일

나. 제안이유

- 훈령으로 시행하고 있는 내부위임 규정이 지방자치법 제95조 (사무의 위임등)로 제정되어 지방자치법 제95조에 의하여 화순군사무의 읍면 위임조례를 개정(정비)하려는 것임.

다. 주요골자

-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중 군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읍면장이 처리할 수 있는 사무를 조례로 읍면장에게 위임하여, 훈령으로 시행하고 있는 화순군 사무의 읍면 위임규정은 폐지함.
- 조례 위임 총 건수 : 69건 (군수 고유 사무)
 - 당 초 : 62건
 - 신규위임 : 11건
 - 군 환 원 : 4건

3. 검토보고 요지

본 조례 개정(안)은 훈령으로 시행하고 있는 화순군사무의 읍면 내부위임 규정의 폐지와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중 일부를 읍면장에게 권한위임 처리케하여 행정능률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위해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도의 정비지시 및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.

